

# 자유비행 고무동력기(F1B)의 기술규정

## 1. 정의

자유비행 부문 고무동력기(F1B)란 고무의 비틀림이나 당기는 힘에 의하여 프로펠러를 돌려 비행하는 모형비행기로 선수의 손으로부터 떠나 비행을 하여야 한다.

## 2. 규정적용

본 규정은 국제항공연맹(FAI) 자유비행 부문 고무동력기(F1B) 경기규정으로 하며, 1부, 2부, 3부, 4부에서도 이를 적절히 적용하여 국내대회의 기본으로 하며 대회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## 3. 경기종목 및 참가자격

경기종목	기 체 규 격		고무줄 무게	참가자격
	크 기	재질 및 형태		
고무동력기 1부	동체길이: 60cm 이하	제한없음		초등학교 1~4학년
고무동력기 2부	동체길이: 60cm 이하			초등학교 5~6학년
고무동력기 3부	동체길이: 70cm 이하			중학생
고무동력기 4부	동체길이: 70cm 이하			고등학생

※ 1,2,3,4부는 바퀴 2개 부착과 랜딩 기어는 프로펠러가 지면에 닿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.

※ 날개길이는 직선(투영도상 날개길이)으로 측정한다.

## 4. 보조자의 수

대회참가 선수는 1명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.

## 5. 경기방법

- 가.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지상에서 손으로 던져야 하며, 비행시도는 반드시 선수 자신이 하여야 한다.
- 나. 고무줄은 경기자 본인이 감아야 한다.
- 다. 와인더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.
- 라. 매회 비행이 끝나면 선수 본인이 기록을 확인 후, 기록지에 서명한다.
- 바. 경기 진행 중 불필요한 이동으로 대회진행이나 기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고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(퇴장 조치도 가능함).
- 마. 기록에 대한 확인요청은 본인의 기체에 한하며, 각 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에 심판장에게 요청한다. 타 선수에 대한 기록 확인요청 및 민원은 제기할 수 없다.

## 6. 공식비행과 횡수

- 가. 공식 비행이란 심판의 신호에 따라 비행 시도 의사로 선수의 손에서 비행기가 이탈되었을 때를 말하며, 1~4부는 2회 비행을 공식비행으로 인정한다.
- 나. 1회 비행, 2회 비행은 각각 당일 공시하는 비행시간 내에 비행하여야 한다. 정해진 시간 내에 비행하지 못할 경우, 해당 비행기록은 0초로 기록한다.

## 7. 비행시간 측정

- 가. 비행시간이란 고무동력기가 손으로부터 떠난 순간부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때까지의 체공시간을 말한다. 심판과 보조원은 2개의 스톱워치를 사용하여, 1/100초 단위까지 측정하며, 그 중 좋은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.
  - (1) 지면 또는 수면에 도착했을 때
  - (2) 지상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
  - (3) 지상 장애물에 의하여 심판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

단, 기체가 지상 장애물을 5초 이내에 통과하여 예정된 항로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연속계측을 인정한다.  
(4) 심판은 경기장 내 정해진 장소(직경 2m)를 이탈하여 계측할 수 없다.

- 나. (1) 고무동력기가 지상 장애물(건물, 산, 기타)의 가림 없이 고공으로 올라가 심판의 시야에서 180초(3분) 이상 비행을 하면 만점으로 처리한다(단, 2분 이상 계속 상승 할 때는 심판 권한으로 만점 처리한다).  
(2) 비행시간 계측이 끝난 뒤에는 경기자 본인이 비행시간을 확인하고 서명한다.

## 8. 채점 및 순위

가. 고무동력 1-4부

- (1) 2회 비행기록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.  
(2) 동점자 발생 시, 동점자 처리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.

## 9. 동점처리

- 가. 2회 공식비행 합산기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2회 비행 중 최고기록을 우선으로 순위를 결정한다.  
나. 2회 합산기록과 최고기록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.  
(1) 저학년인 경우  
(2) 나이가 어린 경우(생년월일 기준)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 10. 기체검사

- 가. 모든 참가선수는 주최 측이 실시하는 기체검사를 받아야 하며, 기체규격 규정에 미달되거나 기체검사를 받지 않은 기체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.  
나. 기체 최대 2대까지 가능하며, 참가기체 각각 기체검사를 받아야 한다.  
다. 검사받은 기체는 주최측의 확인 사인 또는 도장 등을 기체에 표시한다.  
라. 참가자는 기체 검사 시, 주 날개와 수평꼬리날개에 참가자의 이름과 참가번호를 표시하여 주최 측에 확인을 받는다.  
마. 경기 진행 중에는 기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.  
바. 경기 진행 중 기체검사를 받은 기체가 손상되었을 경우, 검사를 받은 기체에 한하여, 주최 측에 확인한 후 수리하여 다시 기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## 11. 실격처리(0초로 기록)

- 가. 기체검사를 받지 않은 기체로 비행했을 경우  
나. 비행 중 프로펠러, 고무줄, 바 퀴등 부품이 떨어졌을 경우